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2. 20 선고 2021가합20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길

피고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변론 종결2022. 10. 11.

판결 선고2022. 12.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해양레저 장비의 제조 및 수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D은 2017. 6. 12.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1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4. D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 C을 D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8. 19.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2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0. 이를 허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28. E로부터 피고 B의 주식 2,000주를 2,000만 원에, F로부터 피고 B의 주식 8,000주를 8,000만 원에 각 매수하여 피고 B의 발행주식 2만주 중 1/2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와 피고 C은 2021. 3. 17. 피고 B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21년 제128호로 인증을 받았다.

1. 피고 C은 다음의 조건으로 피고 B의 채무를 인수한다.

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담보인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17억 원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다.

나.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순위 담보인 I에 대한 채무 10억 원을 인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다.

다. 원고가 피고 B에 투자한 10억 원은 피고 C이 책임지고 조속한 기간 내에 반환한다.

라. 상기 조항이 전부 이행 완료될 경우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피고 B 주식 전부를 피고 C 또는 피고 C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

2. 원고는 다음의 조건으로 피고 B에 투자한 금원을 반환받기로 한다.

가.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 17억 원(주식회사 H)과 10억 원(I)을 인수하는 즉시 피고 B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피고 C이 지정하는 자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변경한다.

나. 원고는 투자금 10억 원을 피고 C으로부터 반환받기 전까지 조선소의 수리선 선가대 관리·운영을

하기로 하고,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금 및 이윤으로 전기요금, 공과금, 자재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그 수익금으로 원고의 투자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월 이자약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 수익금이 발생하면 투자금 반환 시 정산한다.

다. 피고 C이 투자금을 반환하면 즉시 조선소 관리·운영을 피고 C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도한다.

바. 원고와 피고 C은 2021. 4. 28. 이 사건 1차 약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2021. 4.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G 등부 2021년 제206호로 인증을 받았다.

1.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1차 약정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1차 약정 중 2.의 가.항에 정한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사임을 위한 보완으로 대표이사 변경 후 신임 대표이사의 보증책임을 아래 내용으로 준수할 것을 추가 약정하고 공증한다.

가. 신임 대표이사는 원고가 보증한 I 회장에 대한 채무 10억 원을 이어 받는다.

나. 신임 대표이사는 원고가 보증한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17억 원을 이어 받는다.

다. 신임 대표이사는 피고 B이 대출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운전자금채무 5,000만 원의 상환을 양도받기로 한다.

라. J과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원고가 수령한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 C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책임을 진다.

마. K 사장의 L 미지급 잔금 2,800만 원을 피고 C이 상환한다.

바. M의 기계기구대금의 잔금 1억 300만 원에 대한 소송결과에 따라 판결된 금액을 피고 C이 상환한다.

사. N의 미지급액 1억 1,800만 원의 상환을 피고 C이 한다.

아. 구내식당의 보증금 500만 원은 임대차 종료 시 피고 C이 반환한다.

자. 이 사건 1차 약정 2.의 나.항에 따라 원고는 조선소 관리·운영을하기로 하였으나, 2021. 5.

1.부터 피고 B과 O은 조선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로 전환한다. 임대차보증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10억 원을 반환할 시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

사. 원고는 2020. 8. 28.부터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1. 4. 29. 사임하였다.

아. 피고 C의 동생인 P이 2021. 4. 29. 피고 B의 새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피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 C이었다.

자. 피고 B은 2021. 7. 21. 유한회사 Q(이하 'Q'라고 한다)에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각종 구축물과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매매대금 5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Q는 피고 B에 본 계약 별지2에서 규정한 인수할 융자금 등을 제외한 12억 2,000만 원을 피고 B이 정하는 자에게 공증해 준다.

4. 피고 B은 중도금 및 제3조에서 정한 공정증서를 받을 경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5. Q는 2021. 8. 5. 이내에 제4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본 계약상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차. 피고 C은 이 사건 제1차 약정 1.의 다.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이 Q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2021. 7. 23.에, 4억 6,000만 원을 2021. 7. 26.에 각 지급하였다.

카. Q는 피고 B에 지급할 매매대금 잔금 중 5억 원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대표이사는 원고의 처 R)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2022. 12. 31.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주식회사 O과 체결하고, 2021. 7.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21년 제215호로 공증을 받았다.

타. Q는 2021. 10. 5. 위 5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파. 원고는 피고 C과 P이 피고 B이 Q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약 16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22. 1. 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하. 피고 B은 2022. 1. 4. 이 사건 1차 약정 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의무가 사실상 모두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1차 약정 1.의 라.항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피고 B의 주식 1만주가 P에게 양도된 것으로 명의개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내지 8, 10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5, 7,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 B의 발행주식 중 1/2을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전체 이익금 중 1/2인 787,250,000원[= 1,574,5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등 매각 관련 이익금 1,464,500,000원 + 피고 C에 대한 임대료채권 11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금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1, 2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B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21. 6. 16. 및 2021. 8. 29.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이익금이 남을 경우 그중 7억 원은 피고 C이 갖고, 나머지는 원고가 갖는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그러면 7억이 안 남으면 사장님이 7억을 채워서 주실 수 있습니까?', '비용이 나가면 더 나갔지 덜 나가는 게 아니에요.', '6억이 남을지 얼마가 남을지.. 저는 이 계약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더 깊습니다.', '저는 지금 손해를 보고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 많은데, 사장님은 이와중에도 남지도 않는 것을 남기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장 팔아서 임대보증금도 안 되는 거 받고 내가야 하는데 남는 게 머가 있을 거라고 남으면 다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 계약은 60정도 되어야 되는 것인데 54에라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길 수 있는 계약이 아니에요.', '손해를 최대한 덜 보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남을 수 있는 계산이 안 돼요. 저는 7억이 남는다고 해도 빚잔치하면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약속한대로 이행했으니 약속한대로 이행하기 바랍니다. 결산의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원고의 제안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원고가 피고 B의 발행주식 중 1/2을 보유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절차나 회사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 B에 대하여 특정 수익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곽상호

판사한상원

판사김달하

별지